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 
제 307 회 임시회

-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# 제 안 설 명 서



2024. 9.

김 기 열 의원

# 제 안 설 명 서

제안자 : 김기열 의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 
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## 먼저,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노상주차장의 주차행위 제한사항 위반 시 부과되는 가산금을 경감하고 상위법령 위임사항 등 현행 조례의 미비사항을 개정함으로써 주민 편익과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.

##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안 제3조제8항제3호에서는 노상주차장에서 지정된 주차구획 외 주차 등 주차행위 제한사항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가산금을 경감하였고
- 안 제14조의2에서는 노상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으며
- 안 제20조의2에서는 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.

**□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**

-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2024년 9월 12일부터 9월 23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 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.

**□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,**

-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에서의 위임사항 중 노상주차장 관련 위반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과징금을 경감하고 노상과 노외 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,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#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【김기열 의원 대표 발의】

|          |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00924087 |
|----------|----------|

발의연월일: 2024. 9. 12.

발 의 자: 김기열, 고명욱, 박종길  
서보영, 이선주

## 1. 제안이유

노상주차장의 주차행위 제한사항 위반 시 부과되는 가산금을 경감하고, 상위법령 위임사항 등 현행 조례의 미비사항을 개정함으로써 주민 편익과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에 기여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노상주차장에서 지정된 주차구획 외 주차 등 주차행위 제한사항 위반 시 부과되는 가산금 경감 (주차요금의 4배 → 1배) (안 제3조제8항제3호)
- 나. 노상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관련 조항 신설 (안 제14조의2)
- 다. 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관련 조항 신설 (안 제20조의2)

## 3. 일부개정조례안: 따로 붙임

## 4. 참고사항

- 가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 1
- 나. 관계법령 : 붙임 2
  - 「주차장법」 제9조제3항, 제8조의2, 제10조제1항
  -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 제4조제1항, 제5조
- 다. 비용추계서 : 비대상

##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8항제3호 중 “4배”를 “1배”로 한다.

제14조의2 및 제2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2(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)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.

1.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: 한 면 이상
2.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: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

제20조의2(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)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|---|
| <p>제3조(주차요금 및 가산금) ① ~ ⑦ (생략)</p> <p>⑧ 공영주차장의 추가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한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3. 법 제9조제3항에 의한 경우 :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의 <u>4배</u>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.</p> | <p>제3조(주차요금 및 가산금) ① ~ 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⑧ -----<br/>-----<br/>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<br/>-----<br/>----- <u>1배</u> -----<br/>-----.</p>  |
| <p>&lt;신 설&gt;</p>  | <p>제14조의2(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)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.</p> <p>1.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: 한 면 이상</p> <p>2.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: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</p>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| <p><u>제20조의2(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) 시행규칙 제5조제 8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 한다.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.</u></p>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
**□ 주차장법****제9조(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)**

① ~ ② (생략)

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.

④ ~ ⑤ (생략)

**제8조의2(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)**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
2.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(노상주차장)

3.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를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(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)

4.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

5.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

② ~ ③ (생략)

제10조(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. 다만,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한조치와 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다.

1. 노상주차장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일시적인 사용 제한

2. 자동차별 주차시간의 제한

3.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경형자동차,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지정

## □ 주차장법 시행규칙

제4조(노상주차장의 구조·설비기준)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구조·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~ 7. (생략)

8.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.

가.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: 한 면 이상

나.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: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

② 노상주차장의 구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제5조(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) 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~ 7. (생략)

8. 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.

9. (생략)